

제413회 정례회
'23. 11. 29.(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봉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3. 제안사유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 비혼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원근거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 민간단체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나 양육 대책은 혼인 가정에 집중되어 있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혼모는 20,132명, 미혼부는 5,889명으로 미혼모 인구가 미혼부 인구 대비 약 3.4배 더 많으며, 충북은 미혼모 599명, 미혼부 171명으로 미혼모 인구가 미혼부 인구 대비 약 3.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들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자리 및 경제활동, 주거 등에 대한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⁵⁾.
- 이에 미혼모·미혼부 가정을 단순히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할 경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으므로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조례에 해당하므로 목적에서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타당함.

5)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 본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는 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함.

- 안 제4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대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중복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한 지원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8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업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지원사업에 출산 전후 상담 및 긴급지원,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추가하여 한부모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하고 주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 보여지며 본 조례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함.
- 안 제12조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최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있음.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임신·출산·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